

1

PART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

공공분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부에서는 징계의 절차, 종류, 효력 등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 1장 징계제도 개요
- 2장 징계관련 Q & A



-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01 ·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예 ·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 처분하여야 함
- 2)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불법한 금품이 아니므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위반으로 징계처분 가능



3.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 비위사실 적발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조사 등을 행한 기관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징계 등 의결요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징계 등 의결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징계 등 의결 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등 의결서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

5 징계처분 등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소청 및 행정소송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 심사·재심사 청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징계 의결 요구

-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처분권자가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견책·감봉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02 · 징계의 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 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 행위의 금지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음주운전, 성매매, 간통, 폭행 등

4) 기타 유의사항

-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예)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징계 가능

03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임(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2. 징계의 효력

종류	기간	인사·신분(공무원임용령)	보수·퇴직급여(공무원보수·수당규정)	비고
중징계	파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해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수당) 전액지급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수당)의 1/8 감액 	
	강등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간 보수의 2/3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액) • 승급제한 - 처분기간(3월)+18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 3월간 각종 수당 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자녀 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감액 	9년 경과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중징계	정직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18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의 2/3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액) • 승급제한 - 정직기간+18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 처분기간 동안 각종 수당 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감액 	7년 경과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감봉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봉처분기간+12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의 1/3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할 감액) • 승급제한 - 감봉처분기간+12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 처분기간 동안 각종 수당 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의 1/3 감액 	5년 경과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견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급제한 -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3년 경과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04 · 징계부가금 제도

-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입니다.
-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금품·향응 수수 후 반환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확대(시행 15.11.19)

(비위유형)

- (기존) 금품 및 향응수수 ⇒ (변경)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기존) 공금 횡령·유용 ⇒ (변경)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부과기준)

- (기존) 금품 및 향응수수액 ⇒ (변경)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 (기존) 공금 횡령·유용액 ⇒ (변경)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 ① 법 제7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05 · 징계위원회의 성격

- 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여야 합니다.
- ※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동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동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

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즉,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06 ·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및 범위

- 징계위원회의 의결등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등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경징계 · 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등의 정족수

-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2. 징계등의 양정

1) 징계등 양정의 의미

- 징계양정등은 징계등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등)에 대하여 징계등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량적 행위라 할 수 있으나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간에 징계등 양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징계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요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양정기준)

-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양정기준 외에 징계사유의 내용 ·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련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행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등과 징계등 종류와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2) 징계의결등의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1항)

3) 징계의 감경

① 공적에 의한 감경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④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지방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은 제외함

- 감경제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비위

②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③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4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양정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4) 징계의 가중

① 비위의 경합

-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수개의 비위를 1건으로 보아 종합하여 징계심의를 하여 양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징계심의 시 각 비위별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문책기준을 그 양정으로 하되, 수개의 비위가 경합된 다른 비위들의 양정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비위에 대한 양정보다 1단계 높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②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발생한 비위

-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견책: 6개월, 감봉: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정직: 처분기간(1~3월) + 18월, 강등: 3월+18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 ③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07 · 징계등의 집행

1. 징계등 집행의 의의

-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징계등 처분권자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은 징계등을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

3. 징계등 집행 기한

-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1항)

- 예) 파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월간 정직에 처함
- ※ 인사발령통지서(공무원 인사 ·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4.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집행한 때는 지체없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2항)

5.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명시한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명시한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6.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 원징계처분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징계등의 집행은 소청의 결정이 있는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7.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정직집행중에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 정직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을 함
나. 감봉집행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 감봉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정직집행을 함

9.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중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사유를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로 변경한 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징계처분과 동시에 직위해제조치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복직조치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

10.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 휴직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등 및 처분이 가능하고,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감액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08 · 불복신청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 함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질의 1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별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처분되어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으로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대체하는 의미에서 범죄적 위험자 또는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운전도중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를 충돌하여 상대차량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4주와 3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여 벌금 250만원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이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구약식’ 처분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호의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과 같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별표 1~3 규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

상훈 추천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한 결과, 추천대상자의 지난 범죄경력자료가 회보되었을 경우에도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叙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범죄 경력을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훈 추천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른 범죄 경력을 회보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공무원의 상해죄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이 도달된 경우, 해당 비위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형사처벌 결정에 관계없이 1월내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제74조(참고인증지의 결정),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증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호에서는 기소중지 결정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징계시효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5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경찰청) :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경찰청 예규)

제6조(경고·주의의 효력)

- ① 경찰공무원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 ②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6

징계처분 후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은?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의미는 견책은 처분일, 감봉1월 및 정직1월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 및 정직2월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 및 정직3월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 강등·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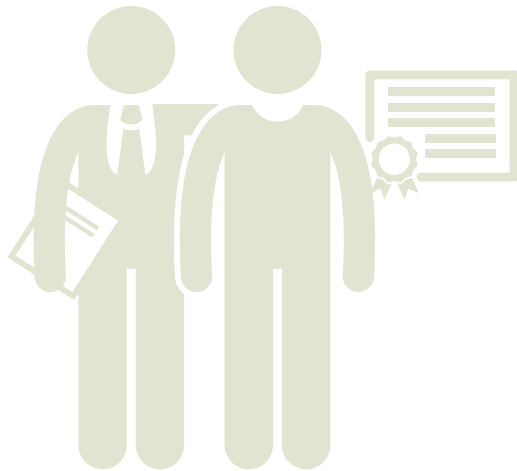


질의 7

6급이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 "차관급표창"을 받은 것이 있으면 징계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급표창"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도 차관급 표창에 해당되는지?

답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청장에는 경찰청장, 관세청장, 검찰총장, 농촌진흥청장, 문화재청장,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등 정부조직법상의 청장을 의미하고, "차관급 상당 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중 청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의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8

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이 적용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강등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제공무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는 특성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도 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적용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9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종료 후 별도의 복직명령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간 경과 후 복직명령 없이 바로 자기 업무에 복귀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서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처분은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며,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정직처분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직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정직에 대한 집행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라면 몰라도 별도로 정직처분에 따른 복귀명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징계처분자에게 복귀일 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미리 인사발령사항 등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10

A(기능8급)는 예산지출 및 과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수년간 지속적인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조사 및 수사결과 A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졌으며(중징계 요구), B(행정6급)는 직상감독자이며 지출원으로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공모하였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으나, 수기결재(지출결의서)와 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상* 결재 시 상호대사 및 상세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고 속은 상태에서 전산승인하여 공금횡령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공문서 파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직상위 회계관계 감독 공무원으로서 관리자의 책임과 지출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경징계 요구). 이런 경우 A와 B를 관련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디브레인: 정부의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과 생성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답변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5항의 관련사건 기준은 징계사유가 동일한 경우, 관련자들끼리 공모가 있었던 경우, 징계사유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징계양정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비위사실과 관계없이 단순히 감독책임만 있는 경우, 비위사실에 일부 동일성이 있으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징계양정을 같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관련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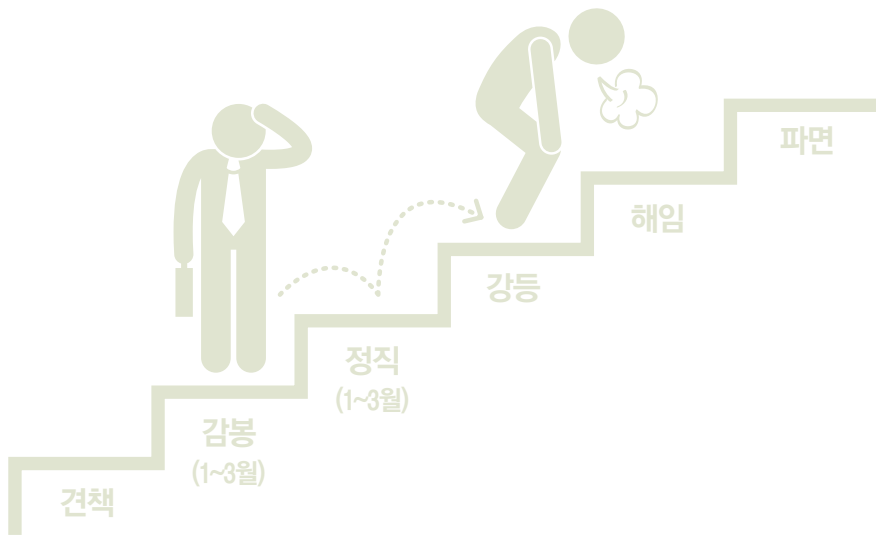
다만, 질의하신 경우는 단순한 감독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직상급 감독자인 B는 지출원으로서 결재 시 상호대사 및 상세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11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18개월 + 공금유용 3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고 되어있는데, 감봉에 해당되면 2단계 위의 징계는 정직2월인지, 아니면 강등인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단계는 징계의 종류에 따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봉의 2단계 위의 징계는 강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12

징계요구권자가 비위사건을 중징계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판단이 애매할 경우 직권으로 반려가 가능한지?

답변

징계의결 요구 반려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로부터 접수한 징계의결요구가 요건불비 등의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① 당해징계(인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 징계대상이 아닌 자를 징계요구한 경우, ③ 징계의결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④ 징계요건이 불비되어 징계심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없이 간사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경우처럼 경징계 사항으로 판단되는 비위를 중징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로 요구하였더라도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반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 13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소송 진행 중인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 만약,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내부결재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징계의결서에 '징계의결 기한을 30일 연장한다'로 의결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답변

징계의결등의 기한은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단서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기관의 장이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서 단순히 징계의결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소송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4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아 범칙처분결과가 통보되지 않다가 분기별 실시하는 면허조회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는 면허정지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사실은 없고 관련 자료 조사 시 무면허 운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 당연히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겠지만 적발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사실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행위로 보아 가중 의결할 수 있는지?

답변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서로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해석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의 가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5

부패행위자의 지휘감독자에 대해 징계감경이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징계의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제한 대상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자의 경우에는 금품관련 비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또는 직무태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책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징계의 감경 제한대상 비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16

공무원이 2011년 12월 7일 견책처분을 받아 말소제한기간인 3년이 2014년 12월 7일로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징계기록말소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징계기록 말소처리를 소급해서 2014년 12월 7일자로 처리하고 2015년 2월 14일자로 통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3년이 지났지만 본인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제출받아 2015년 2월 14일로 말소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Ⅱ. 공무원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4.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나. 말소 기한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징계기록의 말소는 신청서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2014년 12월 7일자로 말소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 17

2015년 6월 30일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2015년 6월 1일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형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정년 퇴직이 가능한지?

답변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3항)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와 통보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의 사유가 있다면 형의 확정 여부를 떠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고도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업무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18

징계의 원인이었던 간통죄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 말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의 보호),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에서는 징계 등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 및 말소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징계기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19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사유 확인 시 관할 경찰서, 감사원, 행자부, 검찰청, 소속 감사부서의 회보로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 회보를 받아야 할 기관이 있는지?

답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정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및 기관의 감사부서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의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 행정자치부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20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면허정지)과 관련하여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아 현재 징계의결 요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징계의결요구 전 본인이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한지?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직(辭職)'을 의미함

답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질의 21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휴직기간도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답변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등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 감액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소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질병휴직, 행방불명,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 제6호(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포함)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휴직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서야 할 것입니다.

질의 22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됨. 기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1건은 특별사면을 받았음.

1. 2003.7.1.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2008.8.15. 특별사면)
2. 2011.11.1.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3. 2015.5.1. 음주운전(자체적발)

위 비위자는 사면된 음주운전 건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전력을 1회로 보고 이번 징계 요구시 2회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하는 지? 만약 비위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속여 공무원범죄처분결과서를 통지받지 못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2011.11.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1.12.1.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2009.4.22.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의 음주운전은 횡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2011.11.1.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전력 횡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에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서를 통지 받지 못한 2015. 5. 1.에 범한 음주운전은 비위사실은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질의 23

2015. 1월에 발생한 비위로 2015. 5월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2014. 1월에 저지른 비위가 2015. 9월에 밝혀져 다시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 가중 처벌해야하는지?

답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다만, 비위가 발생한 시점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이어야 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비위 사실의 확인 시점이 징계처분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다하더라도 비위사실의 발생일은 그 기간 중에 있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4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하는 지?
2. 규칙 제4조 제2항(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지?

답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며 이 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